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23. 10. 16.(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024년도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3년 10월 4일
- 회부일자: 2023년 10월 4일

3. 제안이유

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대상기관: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
- 출연목적 및 필요성
 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 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출연이 필요함
- 출연 예정금액: 180,000천원

- 출연내역: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업비
- 기대효과
 - 충북 도내 우수학생 조기발굴 및 성장 지원
 -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실현

5. 검토의견

가. 출연계획안의 개요

- 본 출연계획안은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출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음

나. 출연의 타당성 검토

- 금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출연금은 1억 8천만원으로 농협은행이 지난 2022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로 지정됨에 따라 금고 약정 협력 사업비로 2022년부터 4년간 지원하는 금액 7억 1천 9백만원 중 일부임

[2022년~2025년 약정현황]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2	2023	2024	2025	계
출연금*	179,000	180,000	180,000	180,000	719,000

[사업기간 및 출연액]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출연연도	사업기간	출연액	비고
재단법인 충북교육 성장지원재단 출연	2024년	2024. 1. ~ 12.	180,000	

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및 「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설립 근거를 두고, 「민법」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됨

- 출연 재원은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로 책정된 금액 7억 1천 9백만원이며,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분할하여 매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재단으로 출연하고 장학금 등의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임

사업현황

-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
- 장학금 조성·관리 사업
-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
-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
-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
-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·위탁하는 사업
-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2023년 장학금 지급 계획 (단위: 명, 천원)

장학금명	사업부서	선발인원	1인당 지급단가	지급액
충북학생 미래핵심인재 장학금	중등교육과	57	1,000	57,000
충북학생 스타트-업 장학금	중등교육과	83	1,000	83,000
충북학생 호도대상 장학금	인성시민과	8	1,200	9,600
충북청소년 아트-비전 장학금	창의특수교육과	30	2,400	72,000
계		178		221,600

다. 종합 검토 의견

- 본 계획안은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 해당되며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됨
- 다만, 당초 금고 약정에 따른 운영비의 출연금 전환 이외에 교육비 특별회계에서의 출연금을 확대하여 조직, 인원을 갖추는 등 당초 재단 설립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계획 수립과 법인, 단체, 개인의 기부금 증대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